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심사보고서

1996. 9. 10.
행정재무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8월 19일 영등포구청장 제출
- 나. 회부일자 : 1996년 8월 20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43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재무위원회 상정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총무국장 윤정중)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주민공개를 년2회로 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안 제2조)
- 주민공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5조)

3. 專門委員의 檢討報告 要旨 (専門委員 : 허영훈)

동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이상 세입·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기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의 주민공개제도는 취약한 지방재정의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지방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지방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도 적절한 제도로서 동조례의 제정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또한 조례의 제정 형식과 내용도 적법하다고 판단되는 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審查結果 : 원안의 결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의안 번호	74
----------	----

제출년월일 : 1996. 8. 19.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재정운영상황의 주민공개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정운영에 대한 주민참여를 통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킴과 동시에 재정운영 및 집행의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주민공개를 년2회로 하되, 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안 제2조)
- 주민공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함(안 제4조)
-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 관련법규 :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
- 합의사항 : 없음
- 예산조치 : 필요없음
- 조례(안) : 별첨

첨부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1부. 끝.

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 재정운영상황 (이하 “재정운영상황”이라 한다.)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주민공개회수)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로 그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3조 (주민공개대상)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2월에 공개되는 재정운영 상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 방침
2.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 조서
3. 당해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예정액
4. 당해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계획
5. 당해년도 기금운용 계획
6. 당해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등의 취득·처분계획
7. 당해년도 공기업 운영계획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년도의 결산개황
2.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
3. 전년도 주민부담 지방세 상황
4. 전년도 지방채등 채무관리 상황
5. 전년도 기금운용상황
6. 전년도 공유재산,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
7. 전년도 공기업 운영상황
8. 기타 재정운영상 주민에게 공개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정운영상황, 공개내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통계수치, 기타 참고자료등을 첨부할 수 있다.

제4조 (공개방법) ①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공개된 재정운영상황에 대해 주민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1.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정책에 관한 사항
2.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3. 시설공사, 물품의 제조 및 구매, 용역에 관한 예산 및 입찰에 관한 사항으로 기밀에 속하는 사항
4.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구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

제6조 (사무의 인계인수로 인한 공개) 구청장의 궐위, 임기만료, 기타 등의 사유로 사무의 인계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구청장은 인수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제4조에 정한 방법에 의거 인수받은 사항은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